



문서번호	지역경제과-43078
결재일자	2014. 12. 23.
공개여부	부분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674호

★주무관	기업활성화팀장	지역경제과장	기획재정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수경	이문호	김광호	김종순	유재룡	12/23 정원오
협 조					

성동근로자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

2014. 12



성 동 구
(지역경제과)

성동근로자복지센터 위탁운영 재계약 협약체결 계획

재계약 심사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결정된 성동근로자복지센터의 위탁계약이 2014.12.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 위탁협약서를 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신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I 관련근거

-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(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)
- 서울특별시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·운영 조례 제7조

II 운영현황

- 수탁자: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(공동대표 서강봉, 최창준)
- 소재지: 성동구 아차산로 107(성수동2가 300-3)
- 시설규모: 160.66m²
 - 사무실: 3층 일부(87.6m²)
 - 인쇄디자인 교육장 및 북카페: 2층 일부(73.06m²)
- 직원현황: 3명(센터장 1명, 사무국장 1명, 직원 1명)
- 위탁기간: 2013. 1. 1. ~ 2014. 12. 31.
 - ※ 최초 위탁일: 2011. 5. 1.
- 위탁사업비: 3억(시비)
- 주요사업
 - 노동인권사업: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, 노동관계법 자문 및 지원, 노동자 건강권 증진사업 등
 -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: 중소기업사업장 및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 조사, 노동권익보호 연구 및 토론회 개최 등

-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: 노동인권교육, 직업능력개발, 직업지도
- 문화복지사업: 건강한 노동문화 조성 및 여가활동 지원, 노동인문학 등 강좌
- 노사협력 및 지역공동체 참여사업: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, 지역 노동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참여 활동

III 경과사항

-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 「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수탁운영 신청서」 제출: 2014. 9. 30.

※ 성동구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7조 1항에 의거 위탁기간 연장신청

-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재계약 심사위원회 개최: 2014. 12. 1.

※ **위원별 합산 평균점수 80.5점으로 재계약 체결확정**

-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재위탁 결정통보: 2014. 12. 1.

IV 위탁운영 재계약 체결

- 근거: 재계약 심사위원회 개최에 따른 적격판정
(별첨) 지역경제과-41108(2014. 12. 4.) 「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재계약심사위원회 결과보고」

- 대상: 서울동부비정규노동센터(공동대표 서강봉, 최창준)

- 위탁기간: 2015. 1. 1. ~ 2015. 12. 31.(1년)

- 협약서 주요내용

- 구성: 협약서 체결목적 등 총 17개 조항
- 위탁시설: 성동근로자복지센터(사무실, 인쇄디자인 교육장, 북카페)
- 위탁사업: 근로복지사업, 근로복지정책 조사연구 사업, 노사협력 증진 및 지역공동체 참여사업, 교육 및 취업지원사업 등

○ 수탁자의 의무

-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령과 조례 등 관련 법규지침 등의 성실 이행의무
-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의 주의관리 요구, 부주의로 인한 손해발생시 배상책임
- 특정 정당이나 단체지원 등 정치적 목적 및 특정 종교 행위 일절 금지

○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

- 예산범위 내에서 전회 예산이 정산마감 된 후 다음 예산 지원
-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
- 사업내용 변경 및 폐지시 사전에 구의 승인필요
- ※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『성동구 보조금 관리조례』,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적용

○ 추가조항

- 제11조(조직 및 인력관리): 신규인력 채용시 사전협의 및 공개채용 모집방식
- ※ 시 노동정책과-67(2013.10.07.) “노동단체지원 및 노동복지센터 점검결과 통보” 반영
- 제15조(개인정보 보호의무 등):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사항
- ※ 전산정보과-15(2014.1.2.) “개인정보의 차업무 위탁시 의무 조치사항 안내” 반영

○ 지도감독

-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정기 및 수시 지도감독
- 위반사항 적출시 경고, 직원 해임요구, 위탁취소 등 조치 강구

V 향후계획

- 재계약 협약체결: 2014. 12. 26.
- 2015년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사업계획안 제출: 2014. 12. 30.

붙임 1. 성동 근로자복지센터 위탁운영 약정서(안) 1부.

2. 성동근로자복지센터 재계약 심사위원회 결과보고 공문1부. 끝.